

제428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5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
-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9)

상정된 안건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2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2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2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2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2
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2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	2
8.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2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2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2

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2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2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2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2
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9)	2

(14시07분 개의)

○소위원장 고민정 죄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
8.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9)

○소위원장 고민정 의사일정 1항부터 15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 제38조 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만 이자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보호 종료 아동 등 자립지원 대상자가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립지원 대상자는 아동복지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가 면제되고 있어서 기초·차상위인 경우 이자가 면제되지만 소득 1~5 구간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에 대해서만 이자가 면제되고 6~10 구간은 이자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정에 따라서 전체 소득구간에 대해서 이자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어서 5페이지 부칙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는데 준비기간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려는 것으로 이자면제 시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 이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정을호 의원, 서지영 의원, 성일종 의원, 이개호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하단에 있는 주요 내용부터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주요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소위 주요 논의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사항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해산 요건으로는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고 잔여재산 귀속 및 출연에 관해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귀속 또는 유사목적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법인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을호 의원안에서는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해서 편입 및 퇴직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인 개정 내용인데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

은 보조금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차는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변경에 관한 지원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하단의 요건을 보시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고 처리 절차는 앞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이 전진숙 의원안과 이개호 의원안이 각각 있습니다.

세 번째 개정 내용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경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칙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정을호 의원이 내신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해산 시에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해산인가신청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효기간 부분이 중요한데요.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행일로부터 10년간 또는 2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 내용은 지금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현재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어서 지난 소위 주요 논의사항 내용입니다.

법안소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궁정 의견으로는 첫 번째로 새로운 보육시설 환경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퇴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그리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퇴로와 추가 지원책을 함께 도입하는 것과 타 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폐원에 따른 보육 공백에 대한 우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산 법인의 보조금 반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 등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법안소위 논의사항에 대해서 교육부가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자료 6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7쪽 이하에 교육부 의견 제시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

로 복지부 시절에는 이게 타 복지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반대를 했었지만 교육부로 넘어와서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부도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6쪽 하단에 보면 장관님께도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7쪽에, 휴원 중인 사회복지법인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또 2년 연속 정원충족률 20% 이하인 어린이집 해서 일단 한 250곳 정도가 이 법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조금 받았던 것은 감가상각하여 반환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고.

8쪽에, 교육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폐원하면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민간어린이집 이런 곳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퇴로지원 방안을 저희들이 중간에, 지난번 법안소위 논의했던 것이 있고 해서 국정기획위원회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도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퇴로지원 방안, 건전한 어린이집 수급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추진 계획(안)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부터 먼저 하고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또 내년 상반기에 정책연구하고 해서 퇴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별 조항에 대해서 일부 수정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사안들이 우리가 결정하고 가야 될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법안을 보면서 할까요, 아니면 앞의 주요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면 될까요? 보면서 정리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2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신설을 하는데 대부분은 다 공통인데 잔여재산 귀속 및 출연과 관련해서 교직원에 대하여 편입 및 퇴직위로금 지급하는 부분, 정을호 의원안 이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준혁 위원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을호 위원 순을 바꿔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갈게요, 정리하고.

○소위원장 고민정 정리를 하고?

○정을호 위원 예, 방금 말씀 주신 것 정리하고 할게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그다음 것부터 먼저 논의를 할까요?

○정을호 위원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이 전진숙·이개호 의원안이 다르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큰 틀에서 아까 1번에 대해서는 정을호 위원님 설명 듣고 토론하는 것

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조항을 넣으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판단을 해서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게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이 조항이 없으면 변경을 못 하는 겁니까?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위원님,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법률 조항이 없어도, 과거에 보건복지부 시절부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퇴로를 열어 주도록 노력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주로 다 인구소멸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노인도 없고 무슨 고아나 장애인 숫자도 적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 주고 싶어도 그게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왔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조정훈 위원** 아니, 질문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에 근거를 두면 분명히 조금 더 명확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여기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이 법에 근거가 없을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이러한 목적사업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법에 따라서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의 변경·추가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목적사업 변경, 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그리고 종전에 있었던 시설에 대한 폐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 없이 지금 시도지사 인가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러한 목적사업 변경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 이 개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전문위원 보시기에 이 조항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이 조항으로 인해서 다른 특례 내용을 마련한다는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서에서 첫 번째 사항,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상황에서는 같이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훈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 부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전진숙 의원안은 지원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그런 구조이고 이개호 의원안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각호로 나열하는 그 차이가 있는데, 부처에서 집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원활한지 부처의 확인을 받아서 정하시는 것이 집행상 보다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말씀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입장에서는 교육부령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각호에 구체적으로 다 제시하지 않아도 교육부령으로 하는 게 좋겠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추가 보조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별칙 규정 신설은 정을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인데 정을호 위원님 의견을 좀 듣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정을호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추가 보조 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이것이 강행규정으로 현재는 되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재량규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강행으로 되어 있는데 재량으로 하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을호 위원님 다시 의견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이 부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특례 규정을 만들려고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칙 규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별칙 조항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래서, 4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별칙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도 어느 정도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우리 법에도 안정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저는 정을호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교육부에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 이게 양형 기준이 맞는 건지 그것을 한번, 혹시 전문위원실이나 교육부에서도 검토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 재산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해산인가신청서를 허위·거짓으로 제출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게 양형 기준에 부합한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이것도 굉장히 형평성에 맞는 건지,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 그

리고 다른 경우에도, 타 징벌 사례에도 기준에 부합한 건지,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은 굉장히 센 형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실이나 교육부의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을호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아까 거기에 의견 준 것 중에 3년 이하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법제실에서 검토의견을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셔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저희는 의원님 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3년 이하 징역에서 ‘즉시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시’ 시점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즉시는 빼고 ‘반환하지 아니한 자’로 해도 충분히 목적은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지영 위원 저는 검토해서 이게 타당하다면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형인 것 같아요. 중형이라서 다른 현재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한다면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제실에서 같이 검토한 의견이어서 저는 그것을 받아서 입안한 거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냥 저희도 여기에 동의합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은 이 정도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합당하다 이렇게 설명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조정훈 위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릴까요, 그것에 관해서?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 답변 주실 게 없으세요, 교육부?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교육부에서도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면 ‘즉시’라는 게, 예를 들어 반환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다음 날 반환 안 했다고 해서 처벌 들어가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즉시’를 제외하면 결국에는 합리적인 통상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즉시’를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정부 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실은 이게 왜 3년의 징역까지 되냐 하면 법 개념상 보면 국가 자산을 개인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합법적이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엄한 죄지요, 국가 재산을 탈취한 거니까. 실은 이것은 이제 국가 재산이 되는 그 시점 그리고 이것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취지 전체에 굉장히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기본재산 등을 반환해야 되는데 읽어 보면 보조금으로 조성된 모든 자산을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반환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샀다고 주장하는 뭐 냉장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모두 반환하는 거지요. 이것 어떻게, 진짜 감가상각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20을 어떻게 반환합니까? 이런 굉장히 실질적인 많은 규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아니면 이것을 금전가치로 환산해서 돈을 내고, 이게 뭐 보조금에 감가상각을 했더니

한 5억이다 3억이다 몇천이다 그러면 그것을 현금으로 국가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사회법 인어린이집에서 갖는다 이것도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치가 중요한 거지 감가상각 10% 남은 냉장고 받아서 국가에서 뭐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좀 실질적인 그걸 한 다음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즉시 반환은 저도 찬성하고, 벌금은 몰라도 징역형이 이게 3년까지 간다는 게 의도하지 않은 징역살이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물론 법사위 가서 양형 기준 전문가들이 더 검토는 하시겠지만 그런 점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은 ‘즉시’를 빼는 것에 동의한다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예, ‘즉시’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조금 반환 범위 방법도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두어서 이 법 취지에, 선의의 반환하는 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부가 이 어린이집을 폐원 결정할 때 감가상각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계산하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사실 이 법안을 제가 많이 반대했었던 사람이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에 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 주자 하는 측면에서 국회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인니까 향후에는 교육부가 이걸 얼마나 잘 꼼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안 하고 부정부패·비리 막 이런 것들이 터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좀 꼼꼼하게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 ‘즉시’를 빼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다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즉시’는 빼고 벌칙 규정은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칙 부분인데요.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이냐 10년이냐, 28년이니까 한 3년쯤 됩니다. 그래서 3, 5, 10 이것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는 어떤 안을 지금 말씀하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부는 5년 안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5년의 근거가 뭐니까?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저희 교육부에서 5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방금 조정훈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국고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절차는 저희가 교육부령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주로 반환 대상이 되는 건 냉장고나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주로 토지하고 건물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감정평가 기간을 거치는 게 보통 실무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 퇴로할 때 시도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도가 꼼꼼하게 심의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5년 정도 시간을 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부의 의견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짧게 주면 또 우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들이 너무 기간이 짧으면 퇴로를 너무 많이 신청할 것 같은 우려도 있어서 5년이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사회복지법인위원회하고도 잘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쪽도 5년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말씀이세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예.

○소위원장 고민정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저는 10년으로 안을 냈는데요, 교육부의 5년 제안을 저도 동의하고요. 중요한 거는 안정적이고 보육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5년이라는 시간이 가능,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서류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논의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물리적 시간을 제외하고도 5년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충분하게 지금 저희가 법안 취지라든가 했을 때, 예를 들면 재산액에 대한 감정평가 및 잔여재산 확정 절차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도 5년이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김준혁 위원 지금 잠깐만. 정을호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소위원장 고민정 정을호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정을호 위원 아니요,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고민정 다 끝나셨으면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아니, 제 생각은 지금 정을호 위원님께서 10년을 이야기하셨는데 또 추가로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건 중간에 타협 이런 건 아니고 한 2년도에서 한 7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들기도 하고요.

○조정훈 위원 저도 좀 발언을 하면……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김준혁 위원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조정훈 위원 아니, 그냥 좀 발상을 전환해서 왜 유효기간이 이게 필요한 거지요? 지금 이게 유효기간이 왜 필요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경비를 추가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유효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필요하면 계속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해산하는 과정인데. 아니, 이 시간 넘어가면 해산을 못 하게 다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특례라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유효기간이?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좀 전에 있었던 사립학교법이나 그런 법들에서도 특례를 도입 할 때는 유효기간을 일반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차원에서 유효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돼 있지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예, 위원장님 그래서 과거에 교육부의 사립학교 해산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3년을 설정했다가요 3년, 3년, 3년 해서 최종 9년까지 연장

했던 사례가 있고 사립대학교 구조개선 지원법은 10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다만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법인이 덩치가 크고 저희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대개 평균 5억 정도 규모의 이런 정도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놓고 볼 때 5년이면 저희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봤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시간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한마디만 더 드리고 위원님들의 결정을 따르겠는데 가장 큰 거는 넘기는 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5년이나 6년을 하면요 결리는 시간이 1·2·3년이라는 걸 가정하면 사회복지법인이집에 의사결정을 바로 해야 되는 걸 강요하는 셈입니다. 회생 절차를 해 보다가 나갈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문이 열렸을 때 반드시 나가야겠다라는 걸 강요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게 우리의 입장은 아닙니까? 아까 보조금도 주는 것도 있고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더 하게 시간을 드리고 지원도 해 드리고 그래도 안 되겠으니 나가라는 분들에게 나가게 해 드리는 건데 몇 년 더 보조금받고 지원받고 해 볼 수도 있는 분들에게 이 법은 이제는 문이 닫히는 겁니다, 너무 짧게 유효기간을 주면. 과연 이게 법 취지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지금 그 지적에 너무 동의가 되는데요. 실은 이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거거든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도 되게 적어요, 민간이나 가정은 각각 30%씩 정도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조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뭔가 퇴로를 주면서 문을 닫아라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이걸 해야 하게끔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산을 장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서는 사실 국가가 굉장히 노력해서 이 정도 끌어올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시간을 두고 빨리해 버려, 빨리 문을 닫아 버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게 보니까 지금 이미 마음을 먹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해도 마지막 결론까지 내리려면 한 3년쯤 걸리는 것 같아요,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그런데 3년을 하게 되면 지금 마음을 이미 먹은 데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조정훈 위원님의 문제 지적에 저도 동의가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장려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인 기간을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10년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대학하고의 또 차별성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규모가 이렇게 크지만 어린이집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10년까지 가는 건 좀 무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김준혁 위원님의 제안하신 대로 이게 이제 막 마음먹으면 3년이 걸린다면 한 두 텁 정도 갈 수 있게끔 하면 한 7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좀 다 수용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7년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정리됐나요?

첫 번째 사안, 아까 정을호 위원님 의견 주셔야 되지요? 2페이지의 윗부분.

○정을호 위원 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정을호 위원 여러 논의를 했는데 폐원 시 보육교사하고 직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었는데 결국은 형평성 문제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다른 여러 사례에 참고가 돼서 다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정을호 위원 이런 사례가 없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로금 이런 거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할 때도 위로금은 없었잖아요.

○정을호 위원 그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정을호 위원 그리고 폐원에 따른, 아이들이 불가피하게 다른 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몸을 담고 있는 아이들이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갔을 경우에 거기에 거는 그런, 위로금이라는 단어가 좀 부적절하면 다른 단어를 써서라도 그게 가능한가 해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것도 8쪽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폐원 시에 영유아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미 영유아법이나 지침에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해 놨고 아이들한테는 크게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할 거니까요. 거기다가 그거를 위로금을 얼마나 줘야 할지 산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건은 조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을호 위원 오늘은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교육부 안에 찬성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해산인가 잔여재산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이 부분은 교육부가 받는 건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도 현재……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수용합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고민정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사용 재산 매입,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 건은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저희가 몇 페이지를 보면 좋을지 얘기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자료로는 24쪽에 보시면 이개호 의원님 안하고 전진숙 의원님 안에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아까 비슷한데요. 결론적으로 해산했을 때 잔여재산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거가 있는

데 여기에다가 그거 말고 또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것도 역시 과도한 특혜 아닌가 그런 논란이 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불수용하는 걸로,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뭐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결국에는 땅하고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매각해서 그 돈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형태인데 지금 이 조항은 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가 꼭, 자기 자자체가 사야 된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자체한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복지법인이 집 운영하시는 분들의 퇴로를 열어 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분들의 재산을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야 될 의무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 측 의견입니다.

○**조정훈 위원** 재산 매입 의무가 있는 건가요, 이개호 의원님 안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소위원장 고민정** 할 수 있다.

○**조정훈 위원** 할 수 있다는데 그거를 의무로 해석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만약에 없으면 이 조항이 없으면,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이 좋아서 땀겨 하려고 그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가능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거는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이 조항이 그런 요구를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근거가 되니까 이 조항까지는 이 법에서는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조정훈 위원** 이해했습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리된 것 같고요.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1번에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신설 그 부분에 대해서 죽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정안 보면 잔여재산처분계획서 심사 후 해산하되 국가보조금으로 조성된 자산 감가상각해서 반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먹튀하지 않고 반환하도록 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조금·출연금 구분은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국가보조금은 솔직히 대부분이 다 인건비였잖아요. 소비되고 없는 나머지 시설에 투자한 금액 이런 것들을 지금 감가상각까지 해서 일부만 반환하게 하는 거는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23년도의 복지위 검토사항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농어촌 소재 법인에는 어린이집 운영비도 지원된다. 그래서 해산 후 남은 재산을 국가보조금과 출연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또 사회복지 어린이집만 폐쇄 후 재산 환수하면 이외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건축할 때 건축비 30%도 정부가 지원을 했고요. 인건비도 80%에서 90%까지 원장 또 영아교사, 유아교사도 다 정부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2005년부터 유아교사의 경우에 30%로 줄인 거고요. 그러면 그 인건비도 다 국가에서 받았는데 그리고 현재 재산이, 보통 부동산 값이겠지요. 그 재산이 이런 법인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거고, 그러니까 출연금만으로 쌓인 재산이 아닌데 이것을 정부 보조와 세제 혜택 결합된 결과물로써 얻어진 이 재산물을 감가상각, 어떤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은 그 논리에 의해서 일부분은 반환을 하고 나머지는 법인이 가져가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교육부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다른 사회복지법인,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인이나 우리 노인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땅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대신 그 운영비는 100%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보통 기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복지법인은 90년대에 저희가 어린이집이 없을 때 국가 보건복지부가 당신들이 조그마한 땅만 있으면, 원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인이 되기가 힘든데 특별하게 국가가 허가를 해 주고 다만 그 운영비나 이런 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를 준 게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법인은 100% 국가에서 줬는데 이 사회복지법인은 80% 나중에는 30%까지 저희가 낮춰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나중에는 결국에 사회복지법인 퇴로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던 것이 바로 거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자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가에서 보조 받은 땅 일부하고 건축물 이것만이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평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다 농어촌·인구소멸지역에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 그 땅값이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평균 5억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의원실로 막 어떤 항의들이 오냐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리면 우리도 해산할 때 뭐 해 줄 거냐' 이런 의견들이 오고. 당연하겠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우리도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혜택 다 받고 그 다음에 또 해산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일단 첫 번째,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제약 없이 스스로 자기 자본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열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허가가 안 됩니다, 불가능한 방법이고. 다만 형평성 문제는 제기돼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아주 효율적인 효과적인 퇴출 방안을 잘 만드는 것이 저희

국정 과제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아서 정책연구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차분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백승아 위원** 잘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잘’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형평성에……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또 가장 큰 것은 공익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제가 질문할 것을 다 하셔 가지고,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조금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의 형평성이 지금 계속 대두되는 사안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벌써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논의 때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고 교육부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재산 환원 특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요구될 그런 다른 특례들이 또 계속 쏟아질 거잖아요. 유사한 내용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것을 다 동의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 얘기인 거예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위원님, 일단 어린이집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사례는 여기 사회복지법인하고 관계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여기 소위 자료에 올라온 것 보니까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보면 신중 검토가 되게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경기나 대구 같은 데 보면 해산 특례대상 확대 요구 이런 것들이 쟁송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는 상황으로 보면 이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통과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일파만파,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리고 아까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도 국정 계획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 얘기도 형평성 때문에 계속 불거지는 얘기들인 거거든요. 하여튼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계속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고민정** 거의 1시간 정도 이 법안 하나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대체로 퇴로를 열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안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서 이따가 전문위원께 정리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법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인 겁니다. 처음부터 국고로 귀속될 거라고 예전했었던 사회복지법인은 이제 와 가지고 그것을 개인의 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고 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당시에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그냥 사회복지법인으로 했더라면 하는 후회들과 원망들이 지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한테도 요청드렸던 게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이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곳들도 있을 테니 이분들에 대한 퇴로 지원 방안도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국정기획위원회하고도 협의가 다 완료돼서 올해 안에 수요조사를 끝

내고 내년 상반기에 정책연구 끝내고 하반기에 지원 방안 마련해서 27년부터는 퇴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것을 과연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고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잘할 자신 있으세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예, 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라고 대답하셔야겠지요. 지금 진짜 모든 것을 다 걸고 이것 약속 하나만큼은 지키겠습니다 해도 반대하셨던 위원들이 이게 영 마뜩지 않고 걱정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구가 워낙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조금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들이 결국 전원 조치가 될 거냐, 폐원을 하면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대부분 다 전원 조치 가능한데 안 되는 곳들도 일부 존재한다고 하셨어요. 퍼센트를 보니까 약 17%가 됩니다, 17%. 17%에 해당되는 어린이들도 어린이잖아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 있습니까?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위원장님, 그 부분은 교육부가 가지고 시군구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해산을 승인할 때 시·도지사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전원 조치까지 전부 다 해당 자치단체가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잘 상의하고 절차를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피해받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니까요 놓쳐지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견들이 있거나 혹은 여러 위원님들의 새로운 안이 있던 것들은 막 조정들을 해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이렇게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다 수용이 되셨고, 2페이지 상단에 있는 잔여재산 귀속 및 출연에 관해서 정을호 의원이 말씀하신 퇴직위로금 지급과 편입 관련된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첫 번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육사업에 사용했던 재산을 매입한 부분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목적사업 변경에 관한 지원 부분은 지원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특별한 이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별칙과 관련해서는 별칙을 신설하되 ‘즉시’라는 문구만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유효기간 부분을 7년으로 최종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첫 번째 개정 사항에 한정된 특례 내용에만 유효기간이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러한 사항들은 계속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제가 끝까지 정말 지겹도록 챙길 거니까요 교육부는 놓치지 않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한 가지,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 주시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청양군 같은 경우 민간어린이집 폐쇄 관련해서 지자체가 해산 장려금을 주면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지자체에서 빨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민간어린이집 퇴로 관련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저희들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충남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지자체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민간에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업종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형평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타임스케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절차를 거쳐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다들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학교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먼저 학교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는 유사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대안교육기관하고는 달리 교육감의 인가를 받고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이고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도 포함이 되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기본운영비하고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사립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서 교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5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지금 개정 대상 조문은 30조의2인데 대안학교 규정은 60조의3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60조의3을 인용해서 대안학교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서 자구 수정 차원에서 수정의견을 제기했습니다.

6페이지,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근거 관련 내용입니다.

현행법 60조의3제1항에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라든가 정보시스템 이용 업무 처리라든가 정보시스템 이용 업무처리 지도·감독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적용 배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구축·운영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4년 기준을 보면 대다수 대안학교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 특성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이용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하위 규정에서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공사립 대안학교는 정보시스템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법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정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8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을 하되 현재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는 내용은 단서에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구축·운영이나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은 3항에 분리해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기 중에 바꾸는 것보다 학기 시작 시점에서 모든 제도가 바뀌는 게 맞을 것 같아서 26년 3월 1일로 시행 일자를 확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각 조항별 의견 말씀 올리겠습니다.

4쪽, 전문위원 수정하신 그 안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7쪽, 역시 전문위원께서 적절하게 수정해 주신 그 조항대로 수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도 학기 초에 하는 게 적정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네요.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제정안 개요와 구성체계,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현재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총 6개의 장, 37개의 본칙,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현행 평생교육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양 법률을 비교한 내용이 지금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 심사경과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에 대해서는 21대에도 발의된 바가 있는데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와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가 있었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때 법안심사에서 논의된 사항은 별첨으로 참고자료2에 정리가 되어 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별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찬성의견으로는 현행 평생교육법상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랑 평생교육법에 따른 추진·전달 체계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찬성의견이 주요 논거입니다.

반대의견의 내용은 평생교육법과 규정 및 내용상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제정의 실익이 작을 수 있다라는 내용과 입법이 아닌 정부의 재정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거입니다.

22대에서는 작년 12월 23일에 법안심사에서 1차 논의된 바가 있고 25년 1월 9일에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공청회에서도 별도 입법 추진 필요성과 독립적 전달 체계 구축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논거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8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와 입법 필요성입니다.

2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평생교육 참여율이 32.3%인 데 반해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2.4% 수준으로 참여율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제정안은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각각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특수성과 현행법 체계에서의 추진 실태에 대한 분석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입법 논의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9페이지 상단 내용입니다.

21대 제정안의 내용과 진선미 의원안을 비교한 내용인데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종전 안에서 쟁점 사항으로 있었던 내용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기존 평생교육법에 따른 심의·전달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을 종전의 것은 의무 사항으로 있었던 반면에 여기에서는 재량 사항으로 하고 있는 내용, 학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는데 초·중·고등학교 학력 인정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관계기관 의견은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료 11페이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을 법률로 만드는 경우에 조문상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인데요.

먼저 이 제정안이 평생교육법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정안을 평생교육법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는 심의 체계 내용입니다.

현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진흥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있고 이 위원의 일부로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신설을 하고 이것을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에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특색은 뭐냐 하면 별도로 하나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현행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하나의 일부로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위원회 신설이 행안부나 이런 기관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신설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시·도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내용입니다. 현재 평생교육법은 시·도평생 교육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도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색은 이 평생교육협의회를 별도로 신설할 수도 있고 조례에 따라서 현재 있는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성은 스무 명 이내로 하면서 장애인평생교육 분야 전문가나 공무원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할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체계의 마지막 부분으로 시·군·구 부분입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서는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또 제정안의 특징이고 이 내용 역시 제정안에 의하면 시·군·구에서 별도로 신설할 수도 있고 현재 있는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를 활용할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과 역할에 관한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분에서 전달 체계 관련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국가, 중앙정부 관점에서 현재 평생교육법의 제19조의2에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는 내용을 두고 있고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에서는 현재 평생교육법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 차원에서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별개로 시·도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이 역시도 별도 신설할 수도 있고 현재 있는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시·도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하게 됩니다.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금 시·군·구평생학습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독자적인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을 만드는 경우에 지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면에서 크게 중요한 사항으로 한 5개 정도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심의·의결 기구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제정안에서는 위원회를 두기는 했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본 위원회는 평생교육진흥법에서, 분과위원회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법으로 나누어지는, 근거 법률이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절충안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이 수정의견이 자료 3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전달 체계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정안이 현행 평생교육진흥법에 있는 전달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하고 조금 내용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진흥센터의 설치나 경비보조·지원, 행정처분, 지도·감독, 청문 등에 관해서 평생교육법하고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이 필요한 사항들은 지금 페이지 수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15~16페이지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해교육과 관련된 학력 인정 부분인데요. 지금 평생교육법에서는 이수한 자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입법례에 비추어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번 항목은 지금 다른 법률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사항들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법에서 이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안이 마련되면 종전에 있던 규정들을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칙 정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평생교육법상에 있는 장애인시설 등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타법 개정을 해서 조문을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컨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이라는 조문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있는 경우에 시설에 취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정안이 마련되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이 제정안을 인용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다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부칙 사항인데 제정안이 지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기간이 조금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상세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조문별 상세 사항에 대한 검토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교육부 의견 제시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신 이후에 다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해 수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은 의무적 예산 지원, 심의·전달 체계 별도 설치 등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진선미 의원님 발의안은 예산 지원을 재량화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기존 심의·전달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견을 조정하였으므로 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다만 법적 체계성을 높이고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문별 검토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너무 많아서 이게……

○**소위원장 고민정** 워낙 내용은 방대한데……

○**조정훈 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 어떻게 되겠나, 이게.

○**문정복 위원** 아니, 이게 21대부터 죽 논의됐던 법안이고 공청회 과정에서도 죽 논의됐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쟁점들이 된다고 해서 다 논의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진선미 의원님 법안이 그동안 유기홍 의원님 또 김영호 의원님 법안을 거쳐 오면서 지속적으로 교육부하고 수정·보완된 내용들이어서 제가 볼 때는 자구 심사 외에는 크게 건드릴 게 없는 것이고.

다른 분들이 참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법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 소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의 강제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대부분 다 바꿔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유사 사업 예산을 활용을 해서 추가 부담이,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인 면에서 저는 약간의, 뭐라고 표현을 하지요? 참 이 단어가……

○**김준혁 위원** 인정하고 가자?

○**문정복 위원** 예, 그런 것이어서 굳이 세세적으로 세부적으로 크게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 법 죽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안을 놓고서 ‘다 토론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동안에 죽 논의했던 과정들이 또다시 번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맞습니다.

이게 21대 때에도 논의가 됐고 저희가 공청회도 진행을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교육부도 찬성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21대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이미 다 진선

미 의원안에서 보완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조문이 다른 법 조항하고 중복되는 것은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제가 따로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다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17페이지의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일 부칙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98쪽에 적혀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는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으로 되어 있지만 1년 6개월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동 제정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전달·자격 체계 또 예산·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돼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 또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시·도 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경우에 이를 위한 예산, 인력, 시설 부지 확보,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산·기구·인력에 대한 사항은 최소 정책 시행 전부터 계획 입안, 관련 부처 협의, 법령 개정, 국회·지방의회 의결 등 과정을 거쳐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1년 6개월 정도 기간 담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이것을 만들려면 위탁기관 협의·선정, 예산·인력 확보, 장애인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신설, 자격 요건 마련 등에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있었는데요. 발달장애인법도 1년 6개월 장애인건강권법도 2년 이렇게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를 건의 올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고 진선미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여기 제정안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돼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추가로 의견을 올리면, 84쪽입니다.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관리·운영 등을 한 경우에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행하는 등록 취소, 교육과정 폐쇄 등에 관한 처분을 규정한 조항인데요.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므로 제정안의 처분 주체가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추가로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오랜 검토가 있었고 21대부터 있었던 법안이고 또 장애인분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너무 미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적인·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다 동의합니다. 이런 것, 이 주장에 여야가 있겠고 진영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법이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제정법이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일단 제 의견을 드리고 어떻게 할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잘해 준 것처럼, 11페이지의 심의 체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에서 ‘~내 분과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분과를 만들지 말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안에서 해결하자 이 뜻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조정훈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의 제안에 저는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분절화 또는 이중화를 최소화하는 게 법률에서 제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도 따로 두지 말고 시·도평생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하자라는 제안에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13페이지, 문제라기보다는 제 질문이 진선미 의원님 법안은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따로 둘 수도 있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내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종전에 현행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센터를 따로 안 만들고.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만들게 되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평생교육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시작하면 한글 교육 해외에서 하는 거 많은 부처에서 하듯이 시·도평생교육진흥원도 계속 장애인평생교육 할 것 같거든요. 시·군·구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지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기능을 한쪽으로 옮기든지 해야지 2개가 다 만들어졌을 때, 똑같은 일을 또는 유사한 일을 2개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로 넘어가서 문해교육 학력 인정인데 제가 문해력이 달려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존의 평생교육법은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의 것을 인정하면 초등학교 주고 고등학교 수준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준다 이 뜻이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 법안처럼 ‘이수한 자에게 상응하는 학력’ 대신 ‘초·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의 효력이 뭡니까? 이 차이가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이라는 구절과 ‘초·중·고등학교 학력’이라고 쓰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담당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현 체계하고 비교하신 부분은, 저희가 평생교육법의 문해교육의 정의가 문자 해독을 포함해서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건데요. 그래서 현 체계 먼저 말씀드리면 법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에 보면 초등 과정, 중학교 과정까지 문해교과서를 지정하고 또 문해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취지로 볼 때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교육 체계가 중학교까

지 의무교육으로 돼 있고……

○조정훈 위원 중학교까지만 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예.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문해 교육기관들이 그렇게 대형화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개 교실 2개 교실 정도 되는데, 그러면 문해교육과정은 문해교과서를 통해서 한 분의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과목 내용상 아마 그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런 검토 없이 바로 법에서 고등학교까지 인정한다는 거는 연관 법령이, 평생교육법하고 또 문해교육의 정의 차원에서도 그것은 시행령에 위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걸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문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다시 복귀하고. 하여튼 구체적인 거는 뭐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빼 수는 없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면……

○조정훈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67페이지에 수정의견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정안 제23조제5항의 내용입니다. 이 제정안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현행 평생교육법하고 동일한 구조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건 동의하고.

실장님아신가요, 국장님아신가요?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볼 때 문제는 문해교육이 평생교육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기관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가 있는 마포 지역에 일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분들 60대·70대 어머님들, 여자중고등이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일반적인 고등학교 나이에 이수하지 못했더라도 고등학교 문해력, 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기관들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인든 미약하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하자는 제안을 일단은 동의하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이 좀 길어졌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실 때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여러 가지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타 법안의 문구와 충돌되는 또는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조정훈 위원 그렇게 보면, 제가 21대 때 법사위에 있는 경험을 조금 살려서 보면 이것은 법사위에서는 100% 보류입니다. 타 법과의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물론 1년 6개월 안에 다른 타 법 다 조율한다라는 그런 큰 가정을 할 수 있지만 법사위에서 가장 경계하고 주의하는 게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체계성 유지

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고요, 그것은 법사위가 해야 될 역할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하면 도대체 무슨 법의 룰 고쳐야 되는지 한번 스캐닝이 다 됐나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률의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법을 이 법이 제정되는 것에 맞게끔 업데이트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9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어쨌든 법 개정은 법 개정이잖아요? 업데이트라고 하시나 개정이라고 하시나 개정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법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금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한 사항들이 자료 99페이지와 10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평생교육법은 관련 부처가 교육부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조정훈 위원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개정하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평생교육법은 종전에 있던 조항을 이 법 제정에 따라 삭제하는 부분이고 발달장애인법은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변경해 주는 부분이고 10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해서 ‘제59조의3제1항제11호 중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평생교육시설로 한다’라고 해서 문구를 바꿔 주는 내용, 그런 취지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평생교육법 일부,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건 복지부겠네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입법기술상으로 법률이 제·개정되는 경우에 타 법 개정을 부칙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이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타 법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 개정을 한다는 거를 장애인평생교육법의 부칙으로 넣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다른 법이 강제로 조정되는 거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인용 법률을 통해서 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 상임위에서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법이 저희가 만든 법을 침해하는 거를 수정하는 것을 저희가……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모든 제정법이 만들어질 때 똑같이 발생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제정법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타 법을 먼저 고칠 수는 없거든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고민정 결국은 제정법이 먼저 생겨야 거기에 부가되는 법들을 고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제정법을 먼저 의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내용적 변경이 아니라 용어나 이름의 변경이라는 것은 동의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는 반드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에서 넘긴다고 하시면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수용된다는 전제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마지막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은 빠르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소위원장 고민정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식논리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사실은 제가 평생 특수교육을 했던 사람이라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데, 물론 오랫동안 세 번에 걸쳐서 법안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21대 때도 돼서 또 당사자 단체들이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가 된다면 저도 거기에 따를 예정이긴 한데 지금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형식적인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잘 드려 보고 싶은데요.

이를테면 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법에만 적용을 받는 것인가, 그러면 기존의 평생교육에서는 전혀 적용 대상이 아닌가의 문제인 건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은 유형이 발달장애도 있지만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 등이 있어요. 그러면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청각장애는 점자라든지 어떤 보장 기구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 일반 평생교육시설에서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가 좀 어려워요, 인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많이 고려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반 평생교육기관시설들이 인프라가 지금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거든요, 전국 각지에. 그러면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는 거기에 가서 배우는 것이, 일반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인프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서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 장애인평생교육이 따로 있게 되면 시설이 한두 개 있겠지요, 지금 그 정도의 인프라만큼 다 여기저기 설비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각·청각·인지 장애가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일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물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포커스는 주로 발달장애거든요. 그러면 통합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까 조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13쪽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통합교육 차원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것도 거기서 논의가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물론 지금 장평법이 따로 제정이 되는 것이니까 장애인평생 교육진흥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 활용의 방안들이,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들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그러면 어디서 논의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저는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법상, 형식논리상 어떻게 조정돼야 되는가에 또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말씀 주시지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장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법체계, 심사자료 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여기 보면 일단 지금 발의안에도 4호의 나목을 보면 기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를 하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일단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분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작년 24년 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말고 일반평생교육기관이라는 항목에서도 한 242개 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법이 제정된다면 어떻게 통합 부분 이루어질까 생각하면 저희가 제정안 제7조에 따르면 국가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도에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존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던 장애인 교육도 계속 유지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하고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정훈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은 양쪽에서 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운영지원계획 같은 거를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예, 기본계획을 그렇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떤 걸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 법 취지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22쪽에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 제외하고는 평생교육법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이 법 취지는 당연히 그동안 평생교육법 체제하에서 조금 보호가 부족했던 부분을 장 평법을 통해서 더 보완하자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더 배제하거나 그런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배제를 하자는 뜻이 아니었고요.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전문성을 갖고 말씀하신 얘기 제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됐는데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좋은 뜻으로 만들었지만 한 시·도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고 길 건너에 평생장애인교육진흥센터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욕먹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이 교육해야 된다. 신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차이가 있다.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좋은 뜻으로 만들었지만 재정 능력 있는 데에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만들 거 아닙니까. 또는 단체장들이 장애인분들에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 차라리 제가 지금 막 드는 생각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학습관 등에 접근성을 위해서 예산 많이 지원해 주고 발달장애인 분들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을 넉넉하게 주는 게, 같은 건물 안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따로 뭐 하나 만들어서, 지금 아무리 장애인 예산을 많이 해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평생교육진흥원보다 크고 더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평

생교육 예산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이건 장애인용이야 아래 버리는 게 과연 맞느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진선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취지 넘겨 가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흥센터와, 다 진흥센터지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대해서는 기존의 진흥원과 학습관을 확대 운영하는 게 낫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저도 좀 의견을 드리면 현재의 현실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장애인들도 무리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이런 제정법들도 고민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시설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도 어렵지요. 그리고 비장애인들하고 섞여서 수업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조금 더 두텁게 하자는 것이어서, 저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혹시나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또다시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이게 두텁게 하자는 건데 사각지대가 생기면 당연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말을 들어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준에 있는 평생교육원도 할 수 있고 장애인평생교육원이 생기면 또 거기서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얘기신 거지요, 정부 측?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래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이 법이 생기게 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디테일로 내려가서 한 가지만 질문하면 13페이지 아까 잘 정리된, 보시면 그 법안에 의하면 근거 16조가 있고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지정·운영’ 이건 강행규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을 쓰든 안 쓰든 강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상으로는 둘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례로 현 평생교육진흥원 활용도 가능하지만 이 강행규정이 걸려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 안에 이걸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조정훈 위원 법 해석은 제가 맞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47쪽에 보시면 법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6조에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지정·운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이 경우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시·도진흥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뭘 다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있는 것을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말씀을……

○조정훈 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 평생교육진흥원 붙여 놓고 옆에는 평생교육진흥센터

이렇게 붙인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김준혁 위원** 아니, 아니지. 그게 아니라 지난번 공청회가 기억이 살살 납니다, 다 기억나지는 않고요.

○**조정훈 위원** 1월이었어요.

○**김준혁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 기억을 되살리고 있느냐면 그때 박경석 전장연 대표하고 박영도 평생교육진흥 전체 회장님하고 어떤 의견이 서로 강하게 주장이 됐는데 두 분이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고 그때 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견을 내시는데 그때 핵심은 이 평생교육원 안에서도 장애인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득이 이 제정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고 박경석 선생은 ‘아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도 현재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일부를 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지금 건물 짓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원을 독자적으로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현재 장애인 이용 시설과 관련돼서 저도 장애인 수련관 이런 데 가서 운영위원도 하고 했지만 그것과 좀 더 다른 평생교육의 어떤 공간들을 장기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당시 공청회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내용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과도기적 단계를 계산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또 더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의견 주시는 것도 충분히 이 법안에서 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맞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도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무화를 시켜 놓지 않으면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의무화만 시키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걸 하게끔 또 해 놓은 것이라서 우려 지점들은 좀 해소되지 않나 싶은데요.

서지영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법의 근본적인 취지야 다 우리 장애인들의 삶과 복지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조정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더욱더 두텁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두텁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원화될 수도 있고 행정의 중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이게 행정적인 기관들을 양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콘텐츠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법안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법안 중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학교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26조입니다. 그러면 장애인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이 법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제정법의 큰 틀은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행정적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장애인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증을 교육하고 이수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을 양산하고, 그다음에는 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전부 다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이 장애인평생교육사가 초중고 학교까지 배치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이게 장애인 학교, 그러니까 장애 아이들을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추가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사를 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장애인 시설의 영유아라든지 학생들까지 하는 데 추가 배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학교에 장애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 아이들이 몇 명이 배치되기도 하지요. 저희 관내에도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 장애인 아이들 티오가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데도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춤춤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거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직업 재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굉장히 노년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 이외,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을 제공해서 사회에 다시 재진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이러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과 교육 자체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우리는 현장에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강경숙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학교 현장이나 유치원 현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장애인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장애 특수학교 담당 교사들도 부족하고 보조 교사들도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현장에 갈등 상황도 많고 교사들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학부모님들과의 갈등도 있는데 지금 초중고까지 평생교육사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자격증을, 현재 단계에서 알 수 없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특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29조에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한다는 건데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어디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있고 어디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특정 도시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게 도시별로 장애인…… 제가 이렇게 도시별로 구분 짓는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문정복 위원 많아요,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

○서지영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과 검토

를 하셨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위원님, 장애인평생교육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여기는 필요한 경우 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현 평생교육법에 있는 조항을 발의안에서 담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의견 주시고 교육부도 같은 의견인데요. 추가 필요한 조항이 시·도 진흥센터 또 시·군·구 학습센터 전달체계라고 법안에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배치기준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실제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데는 발의안에 따른 평생교육법 체계하고 유사합니다. 평생교육법도 지금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에는 평생학습관에 어느 기준을 가지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장애인평생교육사는 초중고 학교는 재량으로 필요할 때 채용할 수 있는 거고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전달체계 그 부분들이고요.

평생학습도시는 지금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있고 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따로 있는데요. 제가 법 개정 당시에는 상황을 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평생교육 관련해서 우리 재정 관련 법률에는 국고 투입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자체 사무로 시행령 정도 수준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법에 있는 평생학습도시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근거로 실제 국고로도 조금 지원을 하는 사실상은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생겼던 그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기초자치체가 한 22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개 넘어까지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아마 사업을 20년 정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확장을 계속하는 단계고요. 작년까지 해서 82개고 아마 올해까지 사업을 96개를 지정했고 계속 확대를 해서 전체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짧게 부탁드립니다.

○**서지영 위원** 예.

자격증 발급하는 거요, 자격증 발급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틀이라도 있습니까? 난 이것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이게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는, 강경숙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강경숙 위원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장애학교나 이렇게 가 보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게 그냥 자격증 제도로 통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지금 현 평생교육법 체계에 있는 평생교육사 말씀드리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거기서 자격 관리를 합니다. 법에 자격요건이 주어져 있고 자격증 발급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행 발의안에 보면 새롭게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존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장애인평생교육사 또 보완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행 초기에는 독립된, 물론 법에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사의 단독의 양성 체계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보완교육 과정도 법이 제정되면 저희가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리되면 현실적으로는 기존 평생교육사분들이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같이 보완교육을 통해서 취득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여러 의견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오늘 밤을 새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훈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16조와 17조, 맞지요?

○**조정훈 위원** 예.

○**소위원장 고민정** 문구와 관련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은 이따가 전문위원이 마지막 정리할 때 그때 정리해서 말씀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백승아 위원님 정말, 왜냐하면 그다음 법안까지 해서 4시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백승아 위원** 짧게 할게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백승아 위원** 58쪽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이 있는데 21조 2항에 전장연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들어간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등등등 이 세부적으로 들어갔던 내용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이게 실익이 없다 하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삭제를 했는데요.

차관님,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법에 안 담겨도 추후에 이 장애인평생교육과정에 본 원안대로 내용이 다 담길 수 있을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부 의견이라고 59쪽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합니다. 사실상 장애인평생교육 정의와 동일한 내용이라 규정에 실익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장애인연대에서 요구한 이 교육 내용이 앞으로 평생 교육과정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당연히 들어가서……

○**백승아 위원** 넣으실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법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0초만 더.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한 건데 현장에서 기관들이 지금 신중검토 의견 낸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들이랑은 어떻게, 거기는 왜 그렇게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여기는 ‘기존 안을 보완해서 해라, 법안을 이렇게 새로 낼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소통할 건지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지금 총 기관 수로 보면, 아마 어찌 보면 16개 기관 정도 의견을 냈는데요. 그런데 조항별 의견 외에 법 제정 자체에 낸 데는 지금 교육청이 한 두 군데 정도 또 광역지자체가 두 군데 정도입니다. 또 기존 21대 법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기재부·행안부에서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중앙부처는 일단 들어오지 않았고요.

일단 법 제정 자체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들은 지난번 21대 의견들이랑 좀 대동소이해서 저희가 지자체들한테 심의체계·전달체계도 기존 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 계속 또 설득하고 이해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현재 참여율이 2.4% 수준이라는 것을 극복하고자 만들어 낸 안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좀 함께 머리 맞대 주시면 좋겠고, 전문위원께서 정리된 사안들 말씀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심의체계·전달체계·시행일, 이 세 가지 사항이 중요한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심의체계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생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해서 종전 체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페이지 47·49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16조에서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 관련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지정·운영 한다’라고 해서 ‘시·도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라는 이 문구를 삭제하는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 열린 기관 중에서 진흥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에 있는 기관은 필요하면 조례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후단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이게 조문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조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고 이 문구대로 가면 시·도 평생교육 관련 기관을 반드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시·도 평생교육 관련 기관을’이라는 단어를 좀 빼자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16·17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한데, 법이 안 그러면 충돌되니까.

16을 보면요 일단 첫째,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입니다. 이게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것 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이게 어떻게 및이 될 수가 있어요? 둘 중의 하나가 해야지.

○**문정복 위원** 아니지요.

○**조정훈 위원**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지정·운영합니다 그러면 지정 주체가 다양한 이 두 개의 다른 선출직을 어떻게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 옆에 보면 수정의견으로 ‘지정·운영 주체를 시·도지사로 하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지요. 이것은 시·도지사로 하고 문구를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똑같은 취지로 17조를 보시면 평생학습센터는 시·도교육감이 하게 돼 있는데 그 밑에 2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여기 도지사는 또 없어요. 시장·군수·구청장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수정의견에 지정·운영 주체를 수정으로 해 놨잖아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수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아, 수정으로.

○**문정복 위원** ‘시·도지사로 하되 시·도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이렇게 해놨잖아요.

○**조정훈 위원** 17조도?

○**문정복 위원** 47페이지 16조의 수정의견.

○**조정훈 위원** 아, 47페이지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문 위원님.

그래서 저는 그것은 동의가 되고, 시·도지사가 하고 그다음에 협의하는 문구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시·도평생교육기관을 이미 있는 것을 지정해야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니까 이것을 빼고.

49페이지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는 지정 주체는 시·도교육감으로 가고, 그러면 진흥센터는 시·도지사가 하고 학습센터는 시·도교육감이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그런데 구의 장이……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것 같으니까 교육부가 정리해서 말씀 주십시오.

49페이지 17조에 대해서.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일단 이게 연계가 돼서 먼저 47페이지 16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발의안에 21대 국회와 비교해서 취지와 소위에서 또 논의하고 이렇게 한 계기가 21대 때 있었던 이전사항들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사항 중에 제일 큰 게 심의체계협의회 그렇고,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전달체계라고 하거든요. 전달체계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것을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조정훈 위원** 이해했어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 것을 활용할 때 평생교육법상의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현 평생교육법상의 체계를 법상에 이렇게 기재를 하지 않으면 아마 그 자체에서는……

○**조정훈 위원** 아니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 뜻이 아니고 주체, 주체를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예, 주체 말씀드리면……

○**조정훈 위원** 저를 잘 따라와 보세요.

16조 47페이지는 평생교육진흥센터의 주체는 수정의견은 시·도지사입니다. 맞지요? 교육감은 아니고.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그 시·도에 있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됐고.

49페이지 17조는 시·군·구장애인학습센터인데 그러면 제 해석상, 도는 학습센터가 없습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저희 평생교육법상에 시·도 단위는 평생교육진흥

원이고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관인데요. 그에 대응한 게, 시·도 단위에 대응한 게 16조고 시·군·구 단위의 대응 전달체계가 17조인데요. 그런데 현 평생교육법상에 시·도 단위의 전달체계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고 각 광역시·도에 1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평생교육법상의 시·군·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전달체계인 평생학습관은 총……

○조정훈 위원 학습센터.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517개가 있고요. 지금 현 평생교육법 상에도 시·군·구상의 전달체계는 시장·군수·구청장하고 교육감이 같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 평생학습관이 총 517개인데요 그중에서 교육감 지정이 329개로 60% 좀 넘고요 나머지 188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은 직접 시민·국민들이 찾아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도 가능하고 교육감도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기초자치단체 수보다도 더 많은 517개의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는 구가 25개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시·도교육감이 25개 구에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만약에 용산구라고 하면 거기서……

○조정훈 위원 용산구의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법에 의하면?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이 법에 따르면 용산구청장도 가능하고 서울시 교육감도 가능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 헛갈리지 않아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그런데 대부분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 교육지원청하고 위치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적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총 220개가 넘을 것인데, 229개 22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구평생학습관은 517개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제17조 평생학습센터의 지정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게 맞다?

여기 학습센터는 자치단체장 없습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일단 저는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이고요.

○조정훈 위원 예, 과장님.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 17조에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보면 평생교육법과 같이 기초자치단체는 시·도교육감하고 자치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도 둘 다 가능하도록 하고요. 현 평생교육법 체계하고 맞춰 보면 16조에는 시·도지사만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고요.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고 교육 쪽에서도 지정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현 평생교육법 체계하고 맞고 그리고 이번 발의안이 기존 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전문위원 계속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그러면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부칙 시행일 관련해서는 1년 6개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오랜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 100% 다 만족스럽지는 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후에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생기면 또 개정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니까요 위원님들 계속 보시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은 좀 넘기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너무 열띠게 토론해 주셔서 그런 것이니 약속된 법안은 다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5항까지 송옥주 의원, 정성호 의원, 김용태 의원, 추미애 의원, 민형배 의원, 이준석 의원,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지방 이양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소위에서 한번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자료 12페이지, 지난번에 논의하신 내용들을 안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제34조제1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명칭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통령령에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항 부분은 절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감한테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통합·분리에 관한 권한을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내용은 4항에서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

우에는 조직과 운영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일정 부분 대통령령으로 한계를 두도록 이렇게 수정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35조 내용은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를 추가하는 교육장의 분장 사무 개정 내용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2쪽, 13쪽의 개정안 통합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대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 부탁드립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국 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소위원장 고민정**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늦게 왔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예.

○**정성국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12페이지 3번에 보면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통합·분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교육감에게 권한을 주되 이때 관계 지방의회나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보고하여야 된다는 의미가 어디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장관이 보고를 받고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그 지역의 여론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데 대한 인지를 하게 됐을 때 교육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에서 설명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법에 그다음에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수동적으로 받는 겁니다.

○**김준혁 위원** 없지요,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보고의 의미가 뭐지요?

○**김준혁 위원** 뭐든 알려는 줘야 되는 것이지요. 통보지요.

○**정성국 위원** 그냥 통보?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이것은 행정 관리적 측면에서, 교육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일일이 다 보고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교육부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항으로 넣은 겁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장관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 보고라는 의미가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고민정** 정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지적 같아요. 그래서 보고가 아니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고치고 가는 것은 어떨까요?

○**정성국 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좀, 통보가 맞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교육감이 결정하게끔 권한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에게도 반드시 통지하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김준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고가 권위적인 단어일 수 있으니까……

○**정성국 위원** 그렇지요. 보고는 좀 성의 있는 느낌이 안 나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지요.

○**김준혁 위원** 통지라고 하는 표현이 좋고.

○**소위원장 고민정** 통고.

○**김준혁 위원** 통보 아니면 우리말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소위원장 고민정** 한글로 ‘알려야 한다’, 좋네요.

○**정성국 위원** 아주 좋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동의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교육부가 반대한 것 중에, 이것 할 때 1개 시·군·구에 꼭 하나씩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여기 개정안에 없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없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수정안은 현행과 같으니까요. ‘1개 또는 2개 이상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만 없으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이게 1개, 무조건 1개씩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덜어 내고 대신에 교육감이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13페이지의 제35조 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인데 고등공민학교라는 용어가 이 법령에 이전에 있었던 이유가, 이게 무슨 의미지요?

○**김준혁 위원** 아직도 고등공민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것인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뭘까요?

○**김준혁 위원** 우리 어려서 고등공민학교 많았잖아요.

○**정성국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를 예를 들면요 교육장은 유초중까지만 관할하고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의 권한은 중학교까지 뻗치는, 우리 부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등공민학교라는 개념은 특별히 이렇게 둬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게 다른 시·도도……

국장님, 어떻게 돼 있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고등공민학교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

서 이렇게 과거부터 조항이……

○정성국 위원 고등공민학교가 몇 개 정도 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정성국 위원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거의 없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런데 거의 없는 법안을 여기에 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도 몇 개가 있으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고등공민학교의 뜻이 뭘까요?

○정성국 위원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김준혁 위원 고등학교 학력 인정 학교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학교.

○정성국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에 고등공민학교가 몇 개 있는지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확인해서 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이 법안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당장에 급한 자치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빠르게 법안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우리 여야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원님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육위 위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학부모님들과 교육감님들께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내는 목표를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첫날부터 좀 어긋났네요. 앞으로는 시간을 꼭 잘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장경숙 고민정 김민진 김준혁 문정복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최화식